## 추가약정서

(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)

| (주)한국투자저축은행 | 앞 |
|-------------|---|
|-------------|---|

| 2022년   | 01원              | 1 | 1일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~ 0 ~ ~ | $\cup$ $\square$ |   | _  |

| 채 무 자 : | (인) |
|---------|-----|
| 주소:     |     |

채무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(가계용)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.

- 제 1조 (목적) 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,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<sup>주)</sup> (全금융기관 합계)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 니다.
- 주)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
- 제 2조 (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)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내 **주택**(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)**을 구입**<sup>주)</sup> 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주) 매매, 증여,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.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
- 제 3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**기한의 이익은 상실**하게 되고, 그에 따라 **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**를 집니다.